

세계여성문학관 관리운영지침

■ 제정 : 2007년 3월 1일

■ 개정 : 2016년 6월 7일

■ 개정 : 2019년 8월 24일

■ 관리부서 :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 내 세계여성문학관(이하 “문학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립 목적) ① 세계여성작가의 문학 작품 및 그에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, 개발 구성하여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성문학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.

② 세계여성문학 작가의 작품과 그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하여 여성문학의 발전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.

③ 관련 연구자 및 학계와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성문학 창작과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우리 대학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다.

제3조 (설치) 도서관의 특화사업으로 학술정보운영팀 내에 설치한다.

제2장 웹사이트 운영

제4조 (목적) 문학관의 모든 정보를 웹 상에서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 (기준) ① 제공되는 정보의 합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한다.

② 여성문학작가데이터베이스는 인명정보에 대한 작가의 검토 및 허락을 얻은 후 정보를 제공한다.

제3장 갤러리 운영

제6조 (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) ① 전시자료는 귀중본, 육필원고, 소장품 등으로 구분하여 수집 관리한다.

② 귀중본은 도서관의 일반자료와 동일하게 등록 처리하며, 별치기호는 W-VA를 사용한다.

③ 육필원고나 소장품 등의 자료는 문학관 소장품 목록대장에 별도로 등록 관리한다.

④ 자료의 훼손 및 열화 방지를 위하여 보존환경을 구비하고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
⑤ 전시자료는 관내열람으로 제한한다.

⑥ 관람자가 전시된 자료를 파괴, 훼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토록 한다.

제7조 (전시회 개최) ① 상설전 이외에도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전시회의 주제는 여성문학 및 독서와 관련하여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제4장 사업

제8조 (사업) 문학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① 자료의 출판
- ② 후원금 모금 및 제공
- ③ 관련 학회의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 지원
- ④ 본교 문학 관련 행사 지원
- ⑤ 기타

제5장 자료의 열람 및 이용

제9조 (자격) 세계여성문학관 자료의 열람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도서관 규정에 명시된 도서관 열람자격이 있는 자
- ② 문학관에 자료를 기증하거나 도움을 제공하여 이용 허가를 얻은 자
- ③ 작품 활동을 하는 문인
- ④ 기타 도서관장의 허가를 얻은 자

제10조 (개관 및 열람 시간) 본 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 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1조 (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) ① 일반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는 관내열람을 기본으로 하되, 도서관장은 특별한 조건을 붙여 관외대출을 허가 할 수 있다.

- ② 관외대출의 경우 문학관에 자료를 기증하여 이용 자격을 얻은 이용자의 경우에는 도서관 기증자 예우에 준하여 적용한다.
- ③ 작품 활동을 하는 문인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열람으로 제한한다.
- ④ 그 밖의 자료 대출의 책수 및 기한은 본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.

제6장 운영위원회

제12조 (운영위원회) ① 문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여성문학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도서관장, 기획처장 및 학술정보운영팀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,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 교원 중에서 도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문학관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14조 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장 기타

제15조 (기타)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도서관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1

이 지침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2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8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